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발행부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80-4415)

편집·검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280-4414)

인 쇄: 2026년 1월 일

발 행: 2026년 1월 일

목 차

I. 타 시도 입법 동향

- ① [제정]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1
- ② [제정]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6
- ③ [제정]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10

II.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 ① [일부개정]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21
- ② [일부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26

III. 해외 법제 동향

- ① [미국]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 35
- ② [독일]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37

IV. 입법 · 정책 현안

-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 · 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 41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① 수탁기관 재선정 시 선정 결과의 의회 동의 대상 여부 ... 47
- ②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의 단체장 거부 금지 규정 가능 여부 ... 51

VI.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 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범위 ... 57
- ② 이미 교부한 지원금 중 환수할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 ... 62

I . 타 시도 입법 동향

I. 타 시도 입법 동향

① [제정]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9939호, 2026. 1. 5., 제정]

□ 관련 상임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및 이동을 동반하는 일상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증가에 따른 동행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 제도 기반 확립 필요

□ 주요내용

- 시장의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동행서비스 적극 발굴 책무 부여 (제3조)
- 1인 가구 등 이동 취약계층 우선지원 규정 (제4조)
- 체계적 사업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련 지원 규정 (제6조 및 제8조)

□ 입법 시사점

▲ 홀로 사는 노인이나 1인 가구 (65세 이상 한정, 전남)를 대상으로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례는 다수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음

* ('26.1.19.기준) 충남도 등 21곳 (광역: 2, 기초: 19)

▲ 하지만, 올 1.5.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이동을 수반하는 일상 활동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으로 사업 대상을 넓혔으며, 사업 내용 또한 '이동지원·안내·귀가동행 등'으로 확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또한, 65세 이상 등으로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1인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음

- ▲ 전북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①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만 19~64세)와 ②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필요가족(만 9~39세)을 대상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도내 시군의 경우 완주군은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지역 내 노인을 대상으로, 전주시는 65세 이상 거동불편자와 질병, 부상 등으로 동행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상 1인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를 시행 중임
- ✓ 이동권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보장 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의 형성 측면에서도 공공의 적극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 이에 (고령인구의 병원동행 서비스 외에도) 이동을 수반하는 일상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동행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 한편, 전북도의 경우 1인 가구가 30만을 넘어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비율('24.기준, 38.2%)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36.1%)보다도 높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만 명에 육박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을 뿐 아니라('25.기준, 26.6%), 전국 평균(21.2%)보다 무려 5%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¹⁾
 - * 특히, ('24.기준) 도의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14.1%로, 전남(16.1%), 경북(14.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음
- ✓ 역내 일자리·주거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1인 가구와 고령인구의 증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 과제임. 다양한 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체계적 추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1) 통계청, 1인가구비율('24.기준) 및 독거노인가구비율('24.기준), 고령인구비율('25.12.기준) 통계 참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행서비스"란 이동을 수반하는 일상적 활동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이동지원·안내·귀가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보조금 교부·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에 따라 동행서비스의 운영·관리를 위해 선정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동행인"이란 동행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수행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동행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공받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동행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서비스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행서비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인가구

2. 그 밖에 시장이 동행서비스의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의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행서비스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행서비스 세부 운영기준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사항
4. 동행인의 자격,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행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효과적 추진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동행, 이사동행 등 시민 맞춤형 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2. 동행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동행서비스 홍보 및 이용자 발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납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동행서비스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개인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939호, 2026.1.5.> 부칙 <제9939호, 20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 2025. 12. 31.] [부산광역시조례 제7862호, 2025. 12. 31., 제정]

□ **관련 상임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타 지역 제정: 경북, 울산)**

□ **제정이유**

화재 안전 취약자가 상주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주요내용**

- 시장의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책무 규정 (제3조)
-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안전 취약자 상주 시 소화기 등 지원 규정 (제4조)
-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우선 지원 대상 규정 (제6조 및 제7조)

□ **입법 시사점**

- ▲ '72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와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물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까지 '임시적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6.1.기준) 현재 그 종류는 총 15가지로 늘어났음
- ▲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 내에 설치되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존치기간이 명확하고 허가 과정에서 소방동의를 얻어야 하나,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단순히 건축주의 신고에 의해 축조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화재 사고에 더 취약함
- ▲ 또한, 건축 관계 법령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후 관리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며, 특히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도 제외, 관리·점검 의무가 없어 축조 이후 안전관리 부실이 우려됨

- ✓ (‘25.12.기준) 도내 건축인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의 수는 약 7만 동**에 달하며²⁾, 미신고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특성 및 수용인원에 따른 **적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 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를 통해 「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축사시설 화재예방이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 등을 통해 도민 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 ✓ 하지만, 해당 조례들로는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관련 **제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부산·경북·울산과 같이 **별도의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조례 제정 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화재사고 **고위험군의 가설건축물 유형을 분류** (물품저장용 천막, 컨테이너 임시숙소, 견본주택)하고, 이에 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을 추가** (건설현장,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빈민가 등)하여 예방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음.

* 건축공간연구원. (2023). 『가설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 HUB), 건축인허가(가설건축물) - 전북특별자치도 현황 (2025.12.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① 시장은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구·군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설건축물에 화재안전취약자가 상주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1.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2.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
3. 소방안전책자 배부

4.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 절차)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재난 또는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홍보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862호, 2025. 12. 31.> 부칙 <조례 제7862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소방시설 지원신청서

3 [제정]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시행 2026. 1. 15.] [경기도조례 제8799호, 2026. 1. 15., 제정]

□ 관련 상임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경기도의 이번 제정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이며, '플랫폼 노동자 지원'으로 포괄하여 조례를 시행 중인 지역은 강원, 경남, 대전, 부산, 전남 등임

□ 제정이유

- 플랫폼 노동자들은 평균 주 5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의 노동과 '갑질' 등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제4조)
- 관련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7조 및 제8조)

□ 입법 시사점

- ▲ 한 연구 결과³⁾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주당 54.1시간을 일해 한국 임금노동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연구 당시 40.7시간/'24년 기준 약 36.7시간)보다 10시간 이상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상당수가 근골격계 및 호흡기계, 소화기계 통증 뿐 아니라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등까지 겹쳐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한편, 현행법상 '플랫폼 노동'을 정의하는 규정은 없으나,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 '노무제공 플랫폼'과 그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1).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 ▲ '18년 4월, 대법원이 배달대행업을 설치해 건당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배달 업무를 수행한 배달원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이후, 현재까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법적 지위에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 하지만, 최근 법원이 다수 판례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점차 넓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경기 등 다양한 지역에선 각종 법률·노동 상담 지원,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교육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전북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음 (도내 군산, 익산, 김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시행中)
- ▲ 하지만, 해당 조례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 등 권익 보호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위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 사료되며,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3년 기준 플랫폼종사자'의 규모는 88.3만 명으로, '22년 79.5만 명 대비 11.1% (8.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플랫폼종사자)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 ('21년) 66.1만 명 → ('22년) 79.5만 명 → ('23년) 88.3만 명
- ✓ 규모의 증가 외에도,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 (12.2%), 건강·안전의 위협 및 불안감 (11.9%), 일방적 계약 변경 (10.5%), 경력인정 곤란 (9.7%), 보수지급 지연 (9.5%) 등 일자리 애로사항도 도출됨

-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종사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방식에 따른 유형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안으로 제정되는 것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배경 등을 살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특히, 조례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건강증진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 등 실효적 규정을 포함하고, 경기도와 같이 전체적 지원을 포괄한 조례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나누어 규정할 것인지, 하나의 조례에 관련 사항을 모두 규정할 것인지 여부 또한 법 제정 실익 등을 따져 검토해야 하겠음

붙임1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하여 현재보다 좋은 상태로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직업트라우마”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이거나 급성적인 심리적 충격, 폭언, 폭력, 사고,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정신적 손상이나 증상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플랫폼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정 사용자 또는 플랫폼에 전속되지 않고 복수의 거래처와 계약하거나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체계적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의 기본방향
2.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지원방안
3. 정신건강 증진 및 직업트라우마 대응 방안
4. 건강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체계
5.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진단 및 상담 서비스
2. 이동형 건강상담소 또는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운영
3.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직업트라우마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 지원
5. 건강정보 제공,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지원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경기도의 관련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단체,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6.1.15.> 부칙 <202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플랫폼 노동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노동·경영 상담 및 지원
3.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5.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6. 플랫폼 노동자의 자조모임·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7. 플랫폼 노동자 조직 교육·홍보·컨설팅 지원
8.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교통·환경·위생 등 관련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사업 지원
9.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외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관련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운영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
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제9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법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플랫폼 노동자 대하여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무료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10.8.> 부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8.> 부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6.> 부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
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부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10.10.> 부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① [일부개정]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6.] [대통령령 제359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 조례 개정 소요에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완화 및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⑦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u>특정구역</u> 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완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 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 법제3조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입법 시사점

▲ 관련 상임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해당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있어 법으로 지정한 특정구역의 세부 지정절차와 완화·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세부 지정 해제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임
- ✓ 이에 따라, 도 해당 조례에선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와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에 표시방법의 범위 및 세부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요구됨

붙임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지역 등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2. 16.>
- ④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6.>

⑤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6.>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⑦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완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 12. 16.>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2. 16.>

③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2025. 12. 16.>

④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강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6.>

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 12. 16.>

⑥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 4. 30., 2025. 12. 16.>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3. 은행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 [일부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4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본조신설>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입법 시사점

▲ 관련 상임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해당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약칭) 「지역상권법」 개정('25.12.30., 일부개정, '26.7.1.시행)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임

✓ 이에 따라, 도 해당 조례에는 법에서 규정한 장소의 용도 외 빈 점포를 활용하기 위한 용도(장소)에 관한 규정 신설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및 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상가건물의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5.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3. 특화거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활성화구역 및 특화거리,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상권에 적용한다.

제2장 상가건물 상생협력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으로 활성화된 지역 내 상가에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그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권장 시 법 제10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를 상생협력상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3장 특화거리 육성

제9조(특화거리 지정·변경 등) ① 시장·군수는 특화거리를 지정·폐지·변경·축소·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특화거리를 지정·폐지·변경·축소·확대하고자 할 경우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화거리와 활성화구역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2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의 특화거리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사업
4.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신청) 제10조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등

제4장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지원 및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에 관한 사항
2.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
2.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외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의 누설 금지)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10.4. 조례5350> 부칙 <2023.10.4. 조례535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화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지정한 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로 본다.

Ⅲ. 해외 법제 동향

Ⅲ. 해외 법제 동향

1 (미국)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 [국회도서관, 2025-24호, 최창수]

□ 주요내용 (요약)

- 미국 연방의회,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 제정 (25.5.19.)
- 신기술 활용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초의 연방 법률로, 형사처벌 규정과 행정규제 관련 규정으로 구성
- 이번 법률은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삭제 절차를 제도화하고 플랫폼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
- 온라인상 비동의 딥페이크 영상물 게시를 금지하고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피해자는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음
 - 플랫폼은 삭제요청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하고 그 복제본 삭제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도 취해야 함
-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영상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

□ 법률의 구성 (제정: '25.5.19.)

구 분	주요내용
제1조(약칭)	TAKE IT DOWN Act로 약칭
제2조(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authentic) 성적 이미지 표현물뿐 아니라 '허위' 디지털 위조물도 금지 대상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범죄구성요건 완화 및 벌칙 상향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등 합리적인 선의의 공개는 면책
제3조(행정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은 삭제요청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 삭제 및 복제본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의무 • 플랫폼의 선의에 따른 접근 차단 또는 삭제는 면책 •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를 단독 법집행 기관으로 명시
제4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이란,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주로 활용하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의미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메일 등은 제외
제5조(분리)	일부 규정 또는 그 개정사항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무효라도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

□ 국내법 비교 / 참조

- 국내법, 3가지 법률*로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 상응 규정
 -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제22대 국회, 법 개정 통해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규정 및 방통위가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법령에 따른 편집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추가
 - ※ 국내 법률이 미국의 해당 법과 함께 동일한 입법 목적으로 동시대에 제·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법률을 입법 참조할 수 있음

□ 주요내용 (요약)

- 독일, '병역현대화법' (포괄개정입법) 시행 ('26.1.1.)
- 평시에는 자발적 복무를 원칙, 안보상황 악화 시 의회 결의 통해 징집 전환이 가능토록 '필요기반 징병제' (Bedarfswehrpflicht) 법제화
- 동법은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병역 관련 설문조사를 의무화, 이를 통해 병력 수요를 상시 점검하면서도 실제 징집은 긴장 사태 또는 방위사태 등 헌법상 요건 충족 시에만 발동되도록 설계
- 동법은 군 복무를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로 규정, 이를 뒷받침하는 보상·연계 장치 도입
- 독일 정부는 2035년까지 현역 26만 명과 예비군 20만 명 확보를 목표로 설정, 자발적 복무 유인 강화를 위해 월 최대 2,000유로 수준의 급여 보장, 직업훈련 및 학업 연계 지원 등 복무 보상 체계를 법률 명시
- 독일의 이번 입법은 전면적 징병제 부활을 피하면서도 병력 동원 역량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려는 절충적 모델로, 인구 감소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식 병역제도 재설계 사례로 평가됨
- 이는 저출산 위기와 고도화된 대북 안보 위협에 동시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미래 국방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참조 틀을 제시함

□ **법률의 구성 [시행: '26.1.1., '병역현대화법' (포괄개정입법)]**

구 분	주요내용
병역법	• 병역 등록, 복무준비 선언서, 징병검사, 의무 징집 규정 신설/개정
군인법	• 기존 '자발적 병역 제공' 제도 폐지 • 모든 병역 이행자를 '기간제 군인' (SaZ)으로 통합 • 운전면허 보조금 등 신규 혜택의 법적 근거 마련
병역의무자 급여법	• [법률 제정] 의무 징집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체계 (기본급·수당 등)를 별도로 규정하여 정규 군인 급여 체계와 구분
병역거부법	• 의무 징집 재도입에 맞추어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 (Zivildienst) 관련 규정 현실화
기타 관련 법률	• 「고용보호법」, 「군인연금법」, 「소득세법」 등 다수의 법률을 개정하여 새로운 병역제도와 기존 사회 시스템 간 정합성 확보

□ **국내법 비교 / 참조**

- (병역제도 유연화)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모델은 병력 증강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행정부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의회의 입법적 결정을 통해 규율, 징병 제도의 정당성과 국민 신뢰 확보 참조
- (복무 인센티브 - 역량 연계 강화) 독일은 자격 취득 지원과 직업 훈련 연계를 통해 군 복무 경험을 개인 역량 축적으로 연계되도록 유도, 우리나라도 단순 금전 보상을 넘어 전역 이후 직업 등 역량 형성과 연계되도록 제도적 보상 구조 설계할 필요
- (여성 인력 활용 로드맵)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헌법」 제39조가 병역의무의 주체를 성별로 한정하지 않으며, 현재 또한 병역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방식이 입법정책적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헌법개정 없이도 법률 개정을 통해 여성의 병역 참여 확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있음

IV. 입법 · 정책 현안

IV. 입법 · 정책 현안

◎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NARS info (2025.12.26.) /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

미등록 이주 아동을 아동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는 한국 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입법·정책적 과제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모의 불법체류를 유발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양가적 관점에서, 그간 정부의 대응 추이와 주요 국가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우선 필요한 정책 과제들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과제들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과 정책 딜레마

-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 사회에 실재하지만, '미등록'이라는 지위 때문에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법적 지위에 따른 권리 보장 소의
- (입법정책적 과제) 아동의 보호는 한국 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입법·정책적 과제이므로, 부모와 정부의 방임 상태 해소 필요
- (한국 사회의 목표)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이라는 목표는 외국인 체류 관리라는 목표와 상충, 관련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정책 딜레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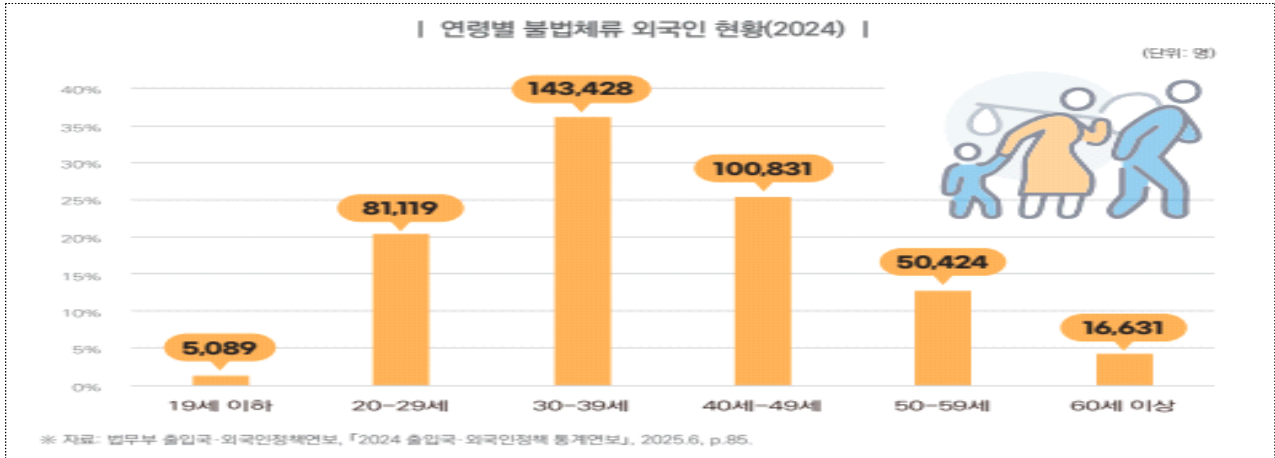
□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 ◎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미국·유럽)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없음"
- (한국)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정

법무부 연구과제로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추정했던 시범적 접근에서는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잔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가 최소 5,295명에서 최대 13,239명으로 추산된 바 있음

※ '24년 출입국 실태를 통해 드러난 불법체류 이주아동 수는 '17년(5,279명)과 유사,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및 체류율 증가세 고려 시 추정치 초과 가능성 있음

〈연령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2024)〉



□ 주요 국가 사례

◎ 주요 국가들은 체류권, 교육권, 건강권을 중심으로 대응,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 견지

구 분	내 용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미성년자 발달·구제·교육(DREAM)' 법안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 조치(DACA)'는 중단된 상태임 ▲ 미등록 이주아동은 초·중등 교육과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일부 지자체가 제한적인 건강보험이나 보육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재류특별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립 의무교육과 예방접종과 같은 일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인도주의적 사유 등에 따른 체류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체류 허용을 받을 수 있음 ▲ 미등록 이주아동은 교육 그리고 거주/소득 요건에 따른 국가 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법적 사유로 추방 불가 시 일시적인 추방 정지를 의미하는 관용을 부여하고 있음 ▲ 특정 요건 충족 시 '체류기회권' 부여 후 체류허가로 연결될 수 있음 ▲ 미등록 이주아동은 교육과 응급 의료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추이

구분	내용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권 확대(초·중등 입학 허용) ▲ 통보 의무 면제(유치원, 학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 체류자격 부여 조치(국내 출생에서 장기 체류로 확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장의 미등록 이주아동 발굴 *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아동을 등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2023년, 경기 시흥시 / 2024년, 전북 남원시)

□ 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와 부모의 불법체류 유발 방지라는 양가적 관점에서, 국내 입법·정책 대응 추이와 주요 국가 사례를 참고하여 3가지 방향의 대응 방향 제시

① 체류자격 부여 제도 상설화

⇒ 부모가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아동을 등록하는 경우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체류자격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 한시적('28.3.31.까지)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

② 아동 보호 필수 권리 서비스 제공

⇒ 제도의 상설화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아동에게 건강권(응급의료 및 예방접종), 교육권(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안전권(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등 아동 보호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③ 향후 과제

⇒ 출생등록권과 보육권 보장은 해당 제도의 도입이 초래할 논란과 파생 효과를 고려할 때 더욱 많은 논의와 검토 필요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수탁기관 재선정 시 선정 결과의 의회 동의 대상 여부

[경기도 고양시, 의견25-0409, 2025. 12. 19.]

□ 질의요지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해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동의 대상에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 의견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24. 2. 8. 의견제시 24-0016 참조)

먼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고양시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수탁기관 변동의 경우, 즉 이 사안과 같이 위탁기간의 종료로 수탁기관을 다시

위탁하는 경우(각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조제4호 참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탁기관변동에 관한 동의안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항에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제1호), 위탁사무의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내용(제2호), 위탁기간(제4호), 비용 산출내역(제5호) 등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수탁기관 선정방식(제3호)'만 동의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동의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결과는 시의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7. 30. 의견제시 25-0176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법제처 2023. 7. 28. 의견제시 23-0297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양시조례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8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시의회의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고양시조례에서 시장이 민간위탁에 관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실상 시의회 에서 사무를 어느 기관에 위탁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사안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 대상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수탁기관변동”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략)

제5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내용
3.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4. 위탁기간
5. 비용 산출내역
6. 그 밖의 참고사항

④·⑤ (생략)

제7조(선정 방법)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⑤ (생략)

제8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 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위원회의 경우 그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 4. (생략)

⑥ ~ ⑩ (생략)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의 단체장 거부 금지 규정 가능 여부**

[전라남도 보성군, 의견25-0319, 2025. 12. 16.]

□ **질의요지**

지방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군수가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 보면,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하 “비공개대상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군수가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보성군 조례안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출 요구를 받은 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군수가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생 략)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VI.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VI.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범위

[법제처, 25-0971, 회신일자 2025. 12. 24.]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라 함)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한정되는지?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종료 예정일이 지나거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종료 예정일이 지나거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등” 앞에 열거된 감사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예를 나열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준하는 정보의 경우에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 국익관련 정보와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등 공익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각주: 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정이유 참조),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각주: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 본문에서의 감사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기 위한 예시를 규정한 것이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위에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성격의 것으로서,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여부의 결정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정보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다는 사유(각주: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례 참조)만으로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1991호로 일부개정된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당시(각주: 2012. 6. 28. 의안번호 제1900370호로 발의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가 가능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사안에 따라 공개 가능 시점이 불명확하고 공개 가능 시점 통지 후 상황 변화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호 단서가 신설되었고, 이후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90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내부검토와 의사결정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기한도 없어 공공기관에 대한 구속력도 약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비공개 결정 통지 시에 결정 및 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개정(각주: 2020. 9. 18. 의안번호 제2104039호로 발의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그 과정이 종료되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각주: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선고 2021누32851 판결례 참조)일 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종료 예정일이 지나거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 8 (생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2 이미 교부한 지원금 중 환수할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

[법제처, 25-0913, 회신일자 2025. 12. 10. / 중기부 질의]

□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하 “예비창업자등”이라 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창업자등이 중소기업창업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고, 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별도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는 예비창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이하 “부당지원금”이라 함)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원금(이하 “정상지원금”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는 부당지원금 외에 정상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중소기업창업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를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는 경우와 그 제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의 문언상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여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인 부당지원금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4일 법률 제1973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중소기업창업법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조치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직접적인 환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각주: 2023. 1. 13. 의안번호 제2119469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제63조를 신설하였고, 2024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342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제40조 및 별표 4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액 이내의 범위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등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을 같은 영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밝히고 있는 바

(각주: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 3. 15.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여기서의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 2024. 8. 2. 회신 24-0501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4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부당지원금 전액 이내의 범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는 부당지원금 외에 정상지원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례 등 참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환수범위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인바, 중소기업창업법 제63조제1항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부당지원금 외에 정상지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 기준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은 부당지원금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는 부당지원금 외에 정상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법」

제63조(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 6.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환수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제한 기간,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